

< 일 러 두 기 >

- 법령명 : 도시락 식품 공장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칙 준수 규정
- 제정일 :2007년 9월 12일
- 최종개정일 :2014년 8월 11일
- 출처 : 대만 식품약품관리서 (방문일 :2022년 1월 25일)

도시락 식품 공장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

준칙 준수 규정

2007년 9월 12일 위서식자 제0960406822호 공고·고시

2014년 8월 11일 부수식자 제1031302212호 공고·개정

요지: 도시락 식품 공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칙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, 아울러 2007년 9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,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별첨과 같다.

근거: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8조 제2항 규정.

공고 사항:

1. 도시락 식품 공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시행 일자는 다음과 같다.

(1) 매일 3,000인분 이상의 음식을 공급하는 공장: 본 공고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 후

(2) 매일 2,000인분 이상 3,000인분 미만의 음식을 공급하는 공장: 본 공고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 후

(3) 매일 2,000인분 미만의 음식을 공급하는 공장: 본 공고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 후

2. 본 공고에서 관련 명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(1) 식품 공장: 공장 등록증을 갖춘 식품 제조업체를 가리킨다.

(2) 도시락 식품 공장: 조리 후 도시락으로 포장하거나 소포장을 하지 않고 직접 대형 용기에 담아 단체 식사에 제공하는 음식 생산 공장(도시

락 및 단체 식사 포함)을 가리킨다.

(3) 공급 식사 분량: 인분으로 계산한다.

3. 도시락 식품 공장에 속하지 않는 기타 요식업은 본 공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